



## 누가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?

다음과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연방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청자격이 있음(실제로 신청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음) 본 공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양식 IT-216, *Claim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*(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청) 및 해당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###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공제액은 뉴욕주 조정 총소득액에 근거하여 연방 공제액의 최소 20%에서 최대 11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자료보관 요구사항

귀하의 세금보고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공제에 대한 자격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

- 지급완료된 수표 또는 우편환(Money Orders) 및
- 세무국에서 조회가능한 환급금 영수증

자료보관 요구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양식 DTF-216, *Recordkeeping Suggestions for Child Care Expenses*(자녀 부양 비용에 대한 자료보관 제안사항)를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본 세액공제 신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세무양식 IT-216, *Claim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*(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청) 및 관련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연방 공제액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503 *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*(자녀 및 부양가족 비용)를 참조하십시오.

**참고:** 공제액이 내야할 세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환급처리됩니다. 단 1년 내내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